

과태료 처분 통지서

제 호

1. 등록번호 :
(또는 주민·법인등록번호)

2. 주 소 :

3. 대표자 성명 :

「비료관리법」 제30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4. 위반내용

①위반일시	②위반장소	③검사기관	④위반내용

6. 처분내역: 과태료 원

7. 납부일자 및 장소: 납부고지서에 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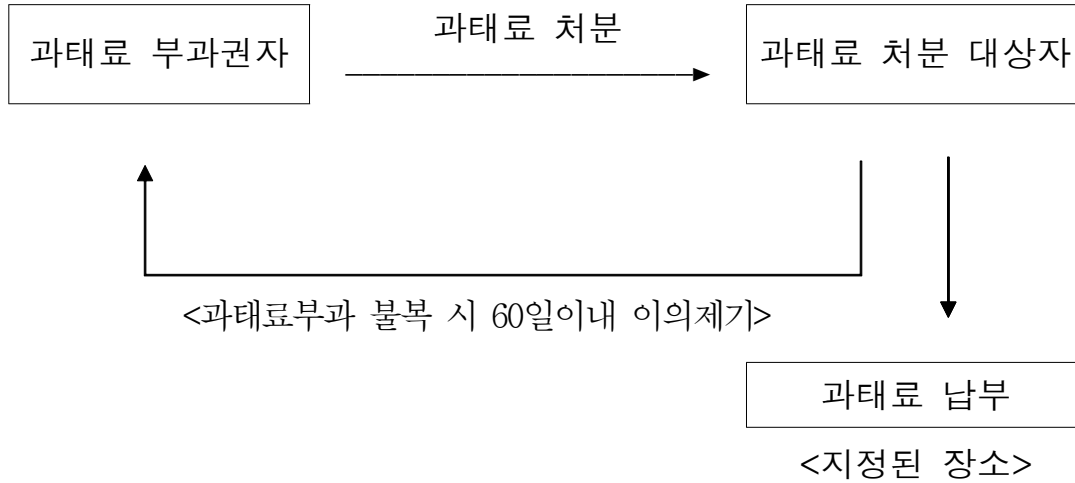
8.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○○지원장

직인

<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>



<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>

1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2.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3.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5.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.